

보도시점

배포시

배포

2024. 10. 30.(수)

#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(CBDC)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

금융위원회는 10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.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84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었다. 이와 더불어,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정내용 변경(1건) 및 지정기간 연장(1건)을 결정하고. 규제개선 요청(1건)을 수용하였다. (의결 결과 세부내용 ☞ [참고])

금번 신규 지정된 '중앙은행 디지털 화폐(CBDC)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'. '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'. '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'는 국민들의 관심과 활용도가 높은 지급결제 및 주식거래 등과 관련되어 있어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#### <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>

구 분	업체명	서비스명
신규지정 (9건)	KB국민은행 외 6개사 <sup>1)</sup>	중앙은행 디지털 화폐(CBDC)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·이체 서비스
	한화투자증권	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
	NH농협은행	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
지정내용 변경(1건)	네이버파이낸셜 외 10개사 <sup>2)</sup>	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
지정기간 연장(1건)	네이버파이낸셜, 하나은행	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
규제개선 요청(1건)	페이히어	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

- 1) ㈜KB국민은행, ㈜신한은행, ㈜우리은행, ㈜하나은행, 중소기업은행, ㈜NH농협은행, ㈜부산은행
- 2) 네이버파이낸셜㈜, ㈜뱅크샐러드, ㈜비바리퍼블리카, 에스케이플래닛㈜, 엔에이치엔페이코㈜, ㈜카카오페이, ㈜쿠콘, ㈜핀다, ㈜핀크, ㈜해빗팩토리, ㈜헥토데이터

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지기털금융총괄과 생임자 과 장 신상훈 (02-2100-2530) 기기털금융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석애 (02-2100-2859) 기사무관 이석애 (02-2100-2950) 1차무관 이전수 (02-2100-2950) 1차무관 이전수 (02-2100-2950) 1차무관 박준상 (02-2100-2950) 1차무관 박준상 (02-2100-2950) 1차무관 박준상 (02-2100-2950) 1차무관 박준상 (02-2100-2950) 1차무관 보증상 (02-2100-2910) 1차무관 보증용인전과 1차무관 보증홍 (02-2100-2970) 1차무관 보증홍 (02-2100-2975) 1차무관 보증홍 (02-2100-2975) 1차무관 보증홍 (02-2100-2650) 1차무관 보증위원회 1차무관 보증왕 (02-2100-2650) 1차무관 보증위원회 1차무관 보험과 1차무관 1차무관 1차무관 1차무관 1차무관 1차무관 1차무관 1차무관
응용 금융위원회 설심자 과 장 이진수 (02-2100-2859)  (공동> 금융위원회 설심자 과 장 이진수 (02-2100-2950) (공동> 금융위원회 전비자 과 장 주홍민 (02-2100-2952)  (공동> 금융위원회 전비자 과 장 주홍민 (02-2100-2910) (공동> 금융위원회 전비자 과 장 이진호 (02-2100-2913)  (공동> 금융위원회 전비자 과 장 이진호 (02-2100-2970) (금융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변경홍 (02-2100-2970) (금융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변경홍 (02-2100-2975)  (공동> 금융위원회 전비자 과 장 신상록 (02-2100-2620) (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권진웅 (02-2100-2625)  (공동> 금융위원회 전비자 과 장 고상범 (02-2100-2650) (자본시장과 본당자 사무관 정종헌 (02-2100-2654)  (공동> 금융위원회 전비자 과 장 신장수 (02-2100-2654)  (공동> 금융위원회 전비자 과 장 신장수 (02-2100-2990) (중소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민형 (02-2100-2996)
<공동>금융위원회 은행과책임자 담당자과 장 사무관이진수 (02-2100-2950) 박준상 (02-2100-2952)<공동>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책임자 담당자과 장 자무관주홍민 (02-2100-2910) 조의열 (02-2100-2913)<공동>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책임자 담당자과 장 사무관이진호 (02-2100-2970) 변경홍 (02-2100-2970) 담당자<공동>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책임자 담당자과 장 사무관신상록 (02-2100-2620) 답당자<공동>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책임자 담당자과 장 과 장 고상범 (02-2100-2654)<공동>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책임자 담당자과 장 사무관신장수 (02-2100-2990) 전종헌 (02-2100-2996)<공동>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책임자 담당자과 장 사무관신장수 (02-2100-2996) 이민형 (02-2100-2960)
응행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상 (02-2100-2952)  <공동> 금융위원회
<공동>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책임자 담당자과 장 주홍민 (02-2100-2910)<공동>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책임자 담당자과 장 이진호 (02-2100-2970)<공동>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책임자 담당자과 장 신상록 (02-2100-2975)<공동>금융데이터정책과과 장 신상록 (02-2100-2620)<공동>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책임자 담당자과 장 고상범 (02-2100-2625)<공동>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책임자 담당자과 장 고상범 (02-2100-2654)<공동>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책임자 담당자과 장 신장수 (02-2100-2990)<공동>금융위원회책임자 당당자과 장 신장수 (02-2100-2996)<공동>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 고영호 (02-2100-2996)
국조개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의열 (02-2100-2913)  <공동>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진호 (02-2100-2970) 금융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변경홍 (02-2100-2975)  <공동>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신상록 (02-2100-2620) 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권진웅 (02-2100-2625)  <공동> 금융위원회 착임자 과 장 고상범 (02-2100-2625)  <공동>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정종헌 (02-2100-2654)  <공동>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부임자 과 장 신장수 (02-2100-2990) 중소금융과 사무관 이민형 (02-2100-2996)  <공동> 금융위원회 착임자 과 장 고영호 (02-2100-2996)  <공동> 금융위원회 작임자 과 장 고영호 (02-2100-2996)
<공동>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책임자 담당자과 장 이진호 (02-2100-2970)<공동>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책임자 택임자 과 장 신상록 (02-2100-2620)<공동>금융에이터정책과라당자사무관권진웅 (02-2100-2620)<공동>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책임자 담당자과 장 고상범 (02-2100-2650)<공동>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책임자 범임자 대임자과 장 신장수 (02-2100-2990)<공동>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 신장수 (02-2100-2990)<공동>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 고영호 (02-2100-2996)
금융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변경홍 (02-2100-2975)  <공동> 금융위원회
<공동>   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   책임자 담당자     과 장 신상록 (02-2100-2620)       <공동>  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   책임자 담당자     과 장 고상범 (02-2100-2650)       <공동>   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   책임자 담당자     과 장 신장수 (02-2100-2654)       <공동>   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   적임자 담당자     과 장 신장수 (02-2100-2990)       <공동>     금융위원회     책임자     과 장 고영호 (02-2100-2960)
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권진웅 (02-2100-2625)  <공동>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고상범 (02-2100-2650)  자본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정종헌 (02-2100-2654)  <공동>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신장수 (02-2100-2990)  중소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민형 (02-2100-2996)  <공동>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고영호 (02-2100-2960)
<공동>  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   책임자     과 장 고상범 (02-2100-2650)       <공동>   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   책임자     과 장 신장수 (02-2100-2990)       <공동>     금융위원회     적임자     과 장 신장수 (02-2100-2990)       <공동>     금융위원회     적임자     과 장 고영호 (02-2100-2960)
자본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정종헌 (02-2100-2654) <공동>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신장수 (02-2100-2990) 중소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민형 (02-2100-2996) <공동>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고영호 (02-2100-2960)
중소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민형 (02-2100-2996) <공동>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고영호 (02-2100-2960)
중소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민형 (02-2100-2996) <공동>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고영호 (02-2100-2960)
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유세열 (N2-21NN-2961)
101   112   212 (02 2100 2001)
<공동>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수호 (02-2100-2630)
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홍연제 (02-2100-2631)
<공동>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곽범준(02-3145-7160)
디지털혁신국 담당자 팀 장 심은섭 (02-3145-7162)
<공동>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정우현(02-3145-8020)
은행감독국 담당자 팀 장 김지웅 (02-3145-8022)
<공동>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代이동규(02-3145-7570)
자본시장감독국 담당자 팀 장 박재영 (02-3145-7590)
<공동>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백규정 (02-3145-7120)
금융IT안전국 담당자 팀 장 이성욱 (02-3145-7125)
<공동>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길성 (02-3145-5700)
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담당자 팀 장 이승훈(02-3145-5685)
<공동>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서영일(02-3145-7460)
보험감독국 담당자 팀 장 황기현 (02-3145-7474)
<공동>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은순 (02-3145-7550)
여신금융감독국 담당자 팀 장 강병재 (02-3145-7447)
<공동> 한국은행 책임자 팀 장 김동섭 (02-750-6603)
디지털화폐기획팀 담당자 차 장 류재민(02-750-6602)







# 참고

#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

# 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(9건) 〉

# ①~②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(CBDC)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

(㈜KB국민은행, ㈜신한은행, ㈜우리은행, ㈜하나은행, 중소기업은행, ㈜NH농협은행, ㈜부산은행)

#### [ 서비스 주요내용 ]

지정 은행(7개사)은 한국은행이 '23.10월 발표한「CBDC\* 활용성 테스트계획(금융위·금감원 공동 발표)」에 따라 구축 예정인 CBDC 시스템 내에서,

- 이용자에게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해 주고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\*\*된 지급수단(이하 '예금 토큰')을 발행하여, 이용자가 예금 토큰을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·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·결제 기능을 제공합니다.
- \*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,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
- \*\* 기존 자산을 분산원장기술 기반 플랫폼에서 유통될 수 있는 디지털 토큰(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될 수 있는 증표)으로 변환하는 과정
- ※ ① 이용자 본 테스트 참여를 신청한 금융소비자 중 10만 명(잠정)을 선별, 전자지갑 개설 및 예금 토큰을 사용한 지급·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이용 자격을 부여할 예정 ② 사용처 이용자가 예금 토큰을 사용하여 물품·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장 등
- ※「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('23.10.5., 한은·금융위·금감원)」중 주요 관련 내용
- · (목적)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기관용 CBDC(지급준비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발행,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, 최종 결제 등에 활용하는 CBDC)를 기반으로 디지털통화의 다양한 활용사례를 점검
- · (내용)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의 경우 일반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여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는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
- · (추진) 본 테스트에 한해 예금 토큰 발행·유통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허용 검토

# [ 참고 - 예금 토큰 이용과정 ]

- (전자지갑\* 개설) 이용자는 기존 은행 모바일 앱 등을 통해(온라인), 사용처의 사업주는 은행 창구 대면 방문을 통해(오프라인)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이 예금 토큰을 이용\*\*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전자지갑을 개설
  - \* 예금 토큰과 같이 토큰화된 지급수단 등을 보관·관리·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공간
- \*\* ① 이용자-물품서비스 구매 시 지급결제 ② 사업주-물품서비스 구매대금 수령(추후 예금으로 전환)

- ②(예금 토큰 발행) 이용자는 이용을 희망하는 액수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의 발행을 은행에 신청, 은행은 해당 액수만큼의 현금 또는 이용자의 기존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화(토큰화)하여 이용자의 전자지갑에 발행
- ③ (지급·결제) 이용자가 사용처에서 물품·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전자 지갑을 사용하여 물품·서비스 구매대금을 지급\*하면, 이용자의 전자 지갑에서 사용처의 사업주 전자지갑으로 구매대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예금 토큰이 이전
  - \* 이용 중인 은행의 모바일 앱 내에서 생성되는 예금 토큰 결제 전용 QR코드를 활용
  - ※ 이용자와 사용처의 전자지갑을 개설·관리하는 은행이 상이할 경우, 해당 은행 간 기관용 CBDC(한국은행 발행)의 이전이 동시에 발생하여 최종 결제 완료
    - ② 본 테스트에 참여한 이용자·사용처 간 물품·서비스 거래 외의 예금 토큰 이전 (예:기존의 송금·이체와 유사한 이용자 간 임의적인 예금 토큰 이전)은 허용되지 않을 예정
- (활용: 디지털 바우처\*) 은행이 분산원장기술에 담겨진 스마트계약기능을 통해 예금 토큰 이용자 앞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하면, 이용자가 바우처 지급 목적에 부합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는 즉시 바우처 발급기관은 스마트 계약에 따라 보조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의 예금 토큰을 이용자에게 환급
- \* 정부·지자체 등이 정책적 목적에 따라 소비자의 특정 물품·서비스 구매 금액 일부를 보조
- ※ (참고) 예금 토큰은 한국은행이 구축·운영하는 CBDC 시스템 내에서만 발행·유통되며, 디지털 바우처 기능 또한 동 시스템 내에서만 활용 가능
- [ 특례내용 ] 은행법 제27조, 제27조의2 및 제28조,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,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,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, 정보처리위탁규정 제4조,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18조제5호

①예금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 예금 토큰 발행을 은행이 업무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고, ②예금 토큰 이용자에 대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될 수있도록 하며, ③전자금융거래시 거래지시 내용 확인(스마트계약기능을 통한바우처 기능 관련) 의무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, ④예금 토큰의 양도·발행시 은행 전산시스템 대신 CBDC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,⑤은행이 예금 토큰의 원장(장부)을 CBDC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,⑥CBDC 시스템 특성에 따라 은행의 내부통신망을 다른 기관의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#### [기대 효과]

지정 서비스를 통해 거래 과정의 자동화,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등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지급결제가 금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\*을 확인해 보고, 여타 분산원장기술 기반 서비스 및 관련 기술과 인프라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\* 다양한 비용 절감을 통해 기존 결제수단에 비해 결제 수수료가 인하되는지, 디지털 바우처 기능 활용 시 정부·지자체 보조금의 집행 효율이 제고되는지 등

#### [ 주요 부가조건 ]

- ※ 현재 예금 토큰의 법적 성격(예: 예금인지 여부 등)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,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거래 효력 발생의 시기·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규율 등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,
  - 이용자의 권리 보호, 거래상대방 보호 및 지급결제 안정성 등을 위해 권리의무 발생·변동 등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조건을 부가

지정 은행은 <sup>①</sup>예금 토큰 발행량에 대해서도 **은행법령상 예금 관련** 건전성 규제(예대율, LCR)를 준수해야 하고, <sup>②</sup>예금자 보호 적용을 위한 조건을 명확히 하며 이용자의 예금 토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하며, <sup>③</sup>테스트 기간 종료 후의 기록 보존·파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한편, <sup>④</sup>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에 관한 권리 보호를 위해, 물품·서비스의 환불 등에 요구되는 사용처 - 이용자간 반대거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사용처가 이용자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 등을 약관 등에 명시해야 하고, <sup>⑤</sup>전자지갑 개설 시점에 이용자로부터 거래정보 제공 관련 별도 동의를 징구해야 하며, <sup>⑥</sup>관련 법령의원칙 및 규정에 반하지 않도록 개인(신용)정보·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하고, <sup>©</sup>서비스 개시前 시스템 등 서비스 운영능력을 점검받아야 하며\*,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·정보보안과 관련한 관계 법령·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
\* 부가조건 준수여부 및 서비스 준비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 금융위·금감원·한은 간 실무 협의체((가칭)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 점검 TF) 운영 예정

## ⑧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

((주)한화투자증권)

#### [ 서비스 주요내용 ]

타 증권사에서 주식 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투자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\*((주)한화투자증권)의 금리 조건이 더 유리한 경우 주식 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합니다.

\* 지정 기업은 투자자에 대해 신용평가를 진행하고, 마이데이터를 통해 투자자의 타사 담보주식 현황을 확인한 후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가능 금액 등을 심사

#### [특례내용]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제1항

증권사는 자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증권 담보부 융자 취급이 가능하나, 본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일시적 신용융자 취급\*이 필요하므로 기존 담보대출의 대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신용융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\* 타 증권사의 기존 증권 담보대출 상환 및 담보 설정 해지 목적

### [기대 효과]

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투자자가 모바일을 통해 기존 대출에 비해 유리한 금리조건의 대출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\*함으로써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\* 소비자는 기존 주식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**담보주식**을 **매도**하거나 제3의 대출처 에서 **자금을 일시 대출**할 **필요 없이** 대출 전환 가능

## [ 주요 부가조건 ]

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정 기업이 주식 담보대출의 대환 전 소비자에게 증권사별 상이한 금리뿐만 아니라 담보비율에 따른 대출 가능금액, 거래수수료 등 기타비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고, 주식담보대출의 대환 후 제3자에게 해당 대출채권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.

또한, 지정 기업은 서비스 개시 전, 투자자가 대출금 미상환 또는 담보 주식 미입고 시 구체적인 회수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.

## ⑨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

((주)NH농협은행)

#### [ 서비스 주요내용 ]

미성년자인 자녀(만 12세 이상, 중·고등학생)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(가족카드)를 발급·사용</mark>토록 하는 서비스입니다.

#### [특례내용]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

원칙적으로 신용카드는 **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**인 자에 한하여 발급가능하나, **부모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**에서 **미성년자인 자녀**가 신용카드(가족카드)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#### [기대 효과]

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까지 확대하여 **미성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**을 **제고**하고, **신용카드 양도·대여 관행을 개선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## [ 주요 부가조건 ]

이용업종 및 이용한도를 제한하고, 자녀의 카드사용 내역 알림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\* (업종제한) 교통, 편의점, 문구점, 학원, 서점 및 청소년 일상생활에 밀접한 업종 등 (이용한도) 원칙적으로 월 10만원 이내, 부모의 신청이 있을 시 최대 월 50만원

# 〈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(1건) 〉

## □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

(네이버파이낸셜㈜, ㈜뱅크샐러드, ㈜비바리퍼블리카, 에스케이플래닛㈜, 엔에이치엔페이코㈜, ㈜카카오페이, ㈜쿠콘, ㈜핀다, ㈜핀크, ㈜해빗팩토리, ㈜헥토데이터)

# [ 기존 지정내용 ] ('23.7월 지정)

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 회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·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. 동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 신고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해 왔습니다.

#### [ 지정내용 변경 ]

일부 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\*가 제공되지 않아 보험료 계산 · 비교의 정확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, 보험개발원 - 신청인 간 정보공유를 위해 규제특례 조항\*\*을 추가(기존 11개사중 7개사만 해당)하였으며, 소비자의 다양한 보험상품 비교를 보장하기 위한 부가조건을 추가(기존 11개사 공통)합니다.

- \* 소비자의 차량정보, 기존 보험계약 만기일 등
- \*\* 보험개발원은 보유 개인정보를 순보험료 산출 목적 외에는 제3자 제공 불가(보험업법 제176조제12항)

## 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[1건] 〉

## □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

(㈜네이버파이낸셜, ㈜하나은행)

## [ 기존 지정내용 ] ('22.9월 지정, '22.11.3. 서비스 개시)

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(이용자 명의)에 보관\*하고,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 서비스입니다.

\* 하나은행은 소비자에게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

계좌소개·안내 등은 은행 본질적 업무를 포함하여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,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하나, 네이버파이낸셜이 이용자에게 하나은행 제휴계좌를 소개·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# [ 지정기간 연장 ] ('24.11.3.~'26.11.3.)

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.

# 〈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[1건] 〉

# □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

(㈜페이히어)

#### [ 기존 지정내용 ] ('20.11월 지정, '22.11월 지정기간 연장)

신용카드가맹점 모집시 사업장 방문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입니다.

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나,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방식\*으로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.

\* 가맹점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의 GPS 정보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영업여부를 검증하는 방법 등

## [ 규제개선 요청 ]
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(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) 신용 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 확인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,

금융위는 비대면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여 소상공인의 사업개시 지연을 방지하는 등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\*하였습니다.

\* 특례 없이도 동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대한 법령정비를 착수할 예정이며,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(최대 1년6개월) 동 혁신금융 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 가능